

---

# 기 관 이 용 안 내 서

---

굿모닝천안요양원

## ▶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

### ○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
### ○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
#### ① 적용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.(법 제7조제3항)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(법 제12조)

#### ② 장기요양인정
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
#### ③ 장기요양인정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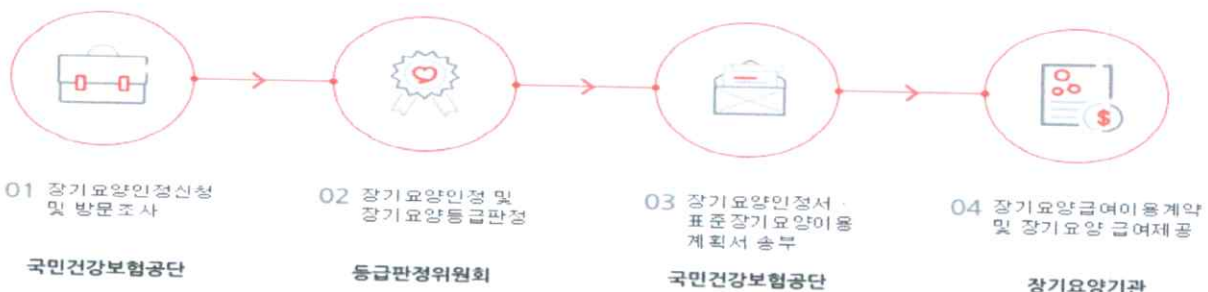
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→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→ 결과 통지(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).

※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

### ○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

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,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.

### ○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

○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

1. 장기요양 1,2등급 수급자

2. 장기요양 3,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
가.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
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
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, 질병,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
-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(주수발자)이 없을 때

나.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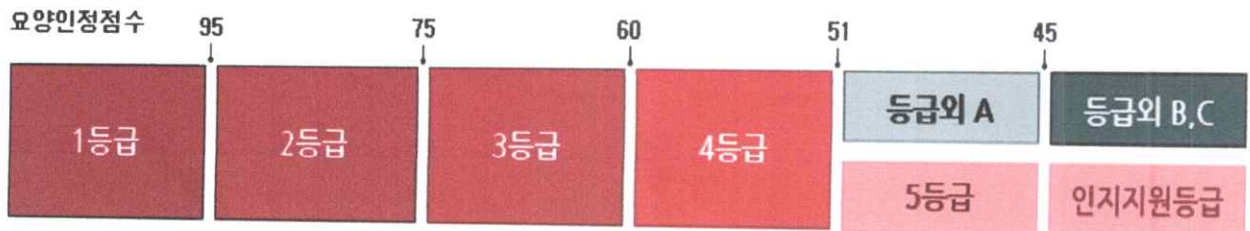
다.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
-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
-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

3.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수급자

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,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
-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

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(孝)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



## ▶ 운영규정의 개요 (입소정원 : 26 명)

###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#### 1. 계약목적

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수급자)의 권리와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 단,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.

#### 2. 계약기간

①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재계약을 해야 한다.

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.

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

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

Ⓐ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
Ⓑ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
⑤ (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)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

→ 4,5은 자체규정을 정함으로 재계약 없이 확인 후 이용료 반영함

#### 3. 이용자 부담 이용료에 관한 사항

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(노인장기요양보험법)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

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
③ 이용료는 (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)에 따라산정 한다.

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#### 4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

①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
②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
③(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) 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
④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)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

## (2)급여비용 변경절차

①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

②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.

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

④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⑤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을 작성한다.

## 5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 함에 있어

입소비용(본인부담금,비급여)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,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.

## 6. 신원인수인의 권리,의무

### 1. 신원인수의 권리

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②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④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
### 2. 신원인수의 의무

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

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

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

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

⑤수급자가 병원 입원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▶ 종사자 근무체계

직책	시설장	사회 복지사	간호 조무사	물리 치료사	요양 보호사	사무원	조리원	위생원
인원	1	2	1	-	11	-	위탁 급식	-
계	총 : 15 명							
-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등)에 의거 직원배치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야간에는 야간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.								

▶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: 시설급여

요양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
1일당	90,450	83,910	79,240
본인부담금(20%)	542,700	503,460	475,440
본인부담금(12%)	325,620	302,080	285,260
본인부담금(8%)	217,080	201,380	190,180

▶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(30일 기준)

연 번	항목	서비스 내용	단가	월비용	비고
1	식재료비	1일 3식	3,800원 / 식	342,000원	30일 × 11,400원 / 일
2	간식비	1일 1회	600원 / 일	18,000원	30일 × 600원 / 일
3	이·미용비	월 1회 컷트	-	현재 무료	추후 유료로 전환 가능성도 있음

▶ 시설의 규모, 설비

시설 현황	침실	2인실	3인실	4인실	특별침실	물리 치료실	간호사 실	프로 그램실
	개소	2	2	4	1	1	1	1
	시설	사무실	상담실	휴게실	목욕실 (세면장) 세탁실	화장실	주방및 식당	비상재해 대피실
	개소	1	1	1	1	2	1	1

▶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

배상책임보험	한화손해보험	2024.11.06. ~ 2025.11.06
화재보험	DB손해보험	2024.10.22. ~ 2027.10.22

▶ 최종 장기요양평가결과 / 기관 우수사례

2021년 평가 결과표

**202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**

**정기평가 B (우수)**



급여종류 : 시설급여

대분류 영역별 수은

대분류영역	기관운영	환경및안전	수용자 관리모양	급여제공 모양	급여제공 평가
별 개수	★★★★★★	★★★★★★	★★★★○○	★★★★★★	★★★★★★
점수	98점	100점	66점	95점	90점

▶ 평가수 : 총점 400점 중 400점(100%)이며, 50점 미만이 50점 미만까지는 0.5개(★○○○○) 부여,  
40점 미만 90점까지는 0.5개(★○○○○) 부여,  
▶ 우수 : 400점 이상 450점까지는 표시하지 않고, 450점 이상 500점 미만 표시  
450점 이상 500점 미만 표시(내결비율)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  
완전한 점수(소수점 이하 표기하지 않음)

**굿모닝천안요양원**

# ▶ 기관의 특성

매월 소식지 발행 및 제공 (가정통신문)				매주 그룹별 프로그램 진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 <p>2025년 07월 가정통신문</p>				<p>2025년 7월 프로그램 일정표</p> <p>노래교실 (일 14회 - 17회) 신체적조형반 (일 14회 - 17회)                      노래교실 (일 14회 - 17회) 신체적조형반 (일 14회 - 17회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일</th> <th>월</th> <th>일</th> <th>수</th> <th>목</th> <th>금</th> <th>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2</td> <td>3</td> <td>4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7</td> <td>8</td> <td>9</td> <td>10</td> <td>11</td> <td>1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4</td> <td>15</td> <td>16</td> <td>17</td> <td>18</td> <td>1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1</td> <td>22</td> <td>23</td> <td>24</td> <td>25</td> <td>26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8</td> <td>29</td> <td>30</td> <td>3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일	월	일	수	목	금	토	1	2	3	4	5			7	8	9	10	11	12		14	15	16	17	18	19		21	22	23	24	25	26		28	29	30	31			
일	월	일	수	목	금	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2	3	4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8	9	10	11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4	15	16	17	18	1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1	22	23	24	25	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8	29	30	3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h3>생신잔치 프로그램</h3>				<h3>노래교실 프로그램</h3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h3>미술치료 프로그램</h3>				<h3>전래희상 프로그램</h3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▶ 급여성서비스 안내

신체활동 지원	①옷갈아입기도움②세면도움③구강청결도움④신체청결도움⑤머리감기도움⑥몸단장⑦식사도움⑧체위변경⑨일어나앉기⑩이동⑪화장실이용하기⑫시력⑬약복용⑭관절움직임
인지관리 정서지원 신체기능	①인지기능②정서지원③신체기능
건강관리	①투약관리지도②약복용 및 인슐린 주사③관절구축예방간호④건강상태 관찰 및 측정⑤건강교육 및 상담⑥감염간호⑦의사진료지원⑧치매간호⑨의료기관의뢰
간호처치	①호흡기간호(흡인간호, 산소요법관리)②욕창간호(예방, 피부, 상처간호)③경관영양(비위관교관관리, 영양간호)④통증간호⑤배설관리(도뇨관, 방광, 회음부, 요루간호)⑥배설간호(관장, 장루간호)⑦투석간호⑧당뇨발관리⑨구강간호
기능회복훈련	①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②신체기능훈련③기본동작훈련④일상생활 동작훈련⑤인지기능프로그램⑥여가, 정서프로그램⑦사회적응훈련⑧가족 대상프로그램⑨물리치료⑩작업치료
기타	①응급서비스②침구리넨 교환 및 정리③환경관리④물품관리⑤세탁물관리

## ▶ 일일 생활시간표

시간	내용
06:00 ~ 08:00	아침 기상, 침구 정리, 위생활동 (세안)
08:00 ~ 08:30	아침식사 및 약 복용
08:30 ~ 10:00	기저귀케어 및 간호서비스
10:00 ~ 10:30	기능회복훈련 및 간식 (개인간식 포함)
10:30 ~ 12:00	프로그램활동 및 간호서비스
12:00 ~ 13:00	점심식사 및 약 복용
13:00 ~ 13:40	휴식
13:40 ~ 14:40	기저귀케어 및 목욕
14:40 ~ 15:40	간식 및 휴식
15:40 ~ 17:00	맞춤 프로그램 진행 (월, 화, 수, 목) 및 기저귀케어
17:00 ~ 18:00	저녁식사 및 약 복용, 양치
18:00 ~ 20:00	기저귀케어 및 취침준비
20:00 ~ 22:00	기저귀케어
22:00 ~ 24:00	기저귀케어
00:00 ~ 06:00	기저귀케어

## ▶ 프로그램 일정

월	화	수	목	금	토
기능회복훈련 (3분)	기능회복훈련 (3분)	기능회복훈련 (3분)	기능회복훈련 (3분)	기능회복훈련 (3분)	기능회복훈련 (3분)
신체기능프로그램 풍선치기 (60분)	여가프로그램 실버체조 (60분)	신체기능프로그램 고리끼우기 (60분)	족욕 및 하지압박마사지 (각 30분)	인지프로그램 미술치료 (60분)	신체기능프로그램 마사지 (30분)
맞춤여가프로그램 노래교실 (60분)	인지프로그램 실버레크레이션 (60분)	여가프로그램 그림색칠 (60분)	인지프로그램 브레인전래회상 (60분)	사회적응훈련 세상뉴스시청 및 전하기(60분)	인지프로그램 책읽기 (30분) 여가프로그램 (30분)
<p>▶ 매월 가족지지 (생신잔치) 진행</p> <p>▶ 년중 프로그램 , 계절 프로그램 진행</p>					

## ▶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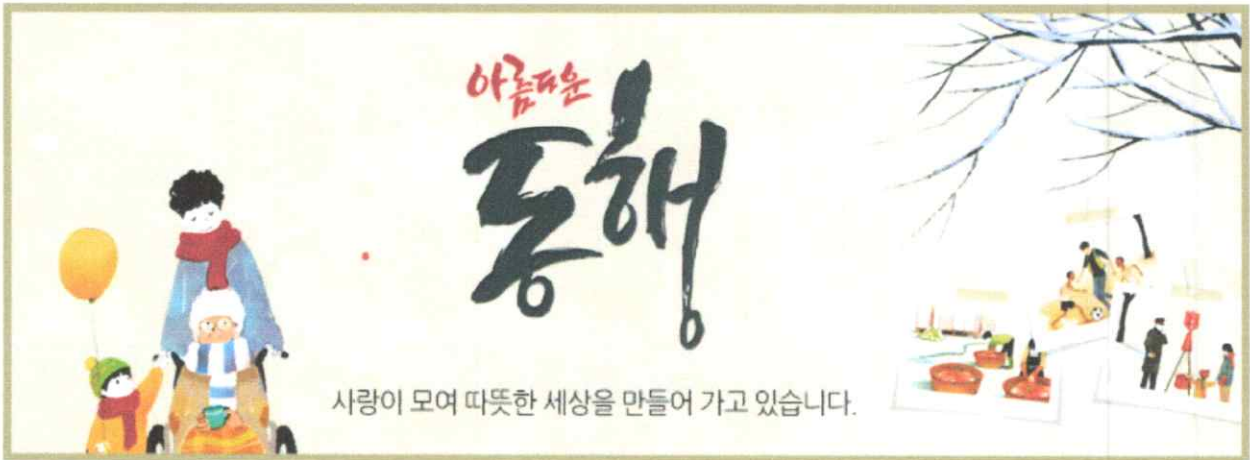
응급환자 발생 → 응급조치 (주간 : 시설장, 간호조무사 , 야간 : 시설장, 야간근무자) → 연락

구분	굿모닝천안요양원 시설장	119구급대 (소방서)
전화번호	010-2585-4400	119

## ▶ 코로나19 대응 현황

단계 구분	생활방역	지역 유행 단계		전국 유행 단계	
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상 황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 개시	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보호자 면회	비접촉 면회 실시(사전예약제)			면회 금지	
	영상통화 적극 활용				
자원봉사 자 계약의사	-자원봉사자·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(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) -계약의사는 사전 협의하여 필요시 방문허용				

▶ 후원 안내



● 후원의 종류

**지정후원**

직접 내방,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
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

**일시후원**

직접 내방,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비치경, 일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
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

**물품후원**

어르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
후원해 주시는 물품은 어르신들 위해 사용됩니다

○ 계좌안내 : 국민은행 735701-01-435906 굿모닝천안요양원

▶ 자원봉사신청 안내 ( 신청은 기관전화 : 041 - 522 - 0000 )



봉사분야	봉사내용
정서지원	말벗, 산책, 프로그램 진행
이미용봉사	두발 정리
프로그램	행사지원, 노래, 레크레이션

# ▶ 노인학대예방 정보

**노년학대 예방**

노년학대 예방을 위한 4가지 원칙

1. 예방: 노년학대 예방을 위한 4가지 원칙
2. 신고: 노년학대 신고 방법
3. 상담: 노년학대 상담 방법
4. 지원: 노년학대 지원 방법

## 기관의 노력

1. 전 종사자 인권교육 (년 4시간) 사이버교육이수
2.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(분기 1회) 실시 (전 종사자)
3. 노인인권보호지침 입소시 제공
4.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 운영위원회 참석

보건복지부 노년보호전문기관

어르신 행복을 지켜드리는 변호,  
기억해주세요

노년학대신고·상담전화  
**1577-1389**  
또는 **129**

노년학대 7대 예방수칙	노년학대의 예측 징후
·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한다.	·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·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	· 다름,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.
·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.	· 노인에게 성격 수직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.
·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한다.	· 노인의 물건 및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.
· 변화하는 사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.	·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.
·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한다.	·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.
·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.	· 노인을 사물에 업소시킨 후 인격을 두절한다.

노년인권, 관심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

고령화 시대, 노년인권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. 힘없는 노인의 소중한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.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인권 문제가 더 이상 거칠, 직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면 어느 누구도 소외·배려받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. 노년인권에 사랑과 관심을 더해주세요.

난 관찰야

노년학대의 약 80%는 가정에서 일어났고, 하지만, 현재는 노인들은 직장과 때문에 학대 사실을 숨기어 합니다.

24시간 노년학대 신고·상담 1577-1389 또는 110

당신의 신고로 어르신께 미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.